

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11. 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개정취지

- 최근 지방경기는 제조업 생산 증가세의 둔화, 건설활동의 위축, 서비스업황의 부진 심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·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별표(융자한도) 개정 (안 제3조)

- 1) 우선지원대상 : 연간 매출액 범위 내 → 지원한도액 범위 안
- 2) 기타지원대상 : 연간 매출액 범위 내 → 지원한도액 범위 안

나. 자금지원신청시 구비서류 개정 (안 제4조)

- 1) 자금지원신청시 구비서류중 “금융기관 대출추천서 및 부채현황서”를 제출토록 개정
- 2) 시행상 불필요한 조문 정비

다. 자금지원 추천제외 대상 개정 (안 제5조)

- 1) 융자지원 확대 및 대출상환없는 연속적인 지원 차단을 위해 “대출상환 완료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”를 “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”로 개정

라. 대출기한 확대 (안 제6조)

- 1) 융자추천 신청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대출기한을 1월에서 3월로 확대

마. 자금 상환연장 진행절차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7조)

- 1) 자금 상환연장에 따른 진행 절차에 있어 현재 운영 실정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특별 지원대상에 대한 관계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조문 정비

바. 이차보전금 교부 신청에 따른 조문 정비 (안 제8조)

- 1) 자금 성격에 따른 이차보전금 집행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은 소관부서별로 이차보전금을 교부 신청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1)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

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 협의 완료

다. 기타사항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10~11쪽
- 2) 입법예고 (2008. 9. 5 ~ 9. 26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다음 각호의 서류”를 “다음 각호중 해당하는 서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5. 금융기관 대출추천서 (별지 제4호서식)
6. 금융기관 부채현황서

제4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 용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심사한 후 속초시와 협정된 시중은행에 지원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금지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

제6조제1항 중 “1월이내”를 “3월이내”로 한다.

제7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해당 시중은행에서는 매월말 현재 상환기간 연장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특별 지원대상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일괄 신청”을 “협약을 맺은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신청”으로 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 및 한도 (제3조 관련)

구 분	내 용
지원대상기업	1. 우선 지원대상(제조업중) 가. 수출상품 생산업체 나.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다. 농공단지 입주업체 라.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큰 업체 2. 특별 지원대상 가. 설악산국립공원지역(설악동)내 중소기업 3. 기타 지원대상 가. 지역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 나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
용 도	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용 자 한 도	1. 우선 지원대상(제조업) : 3억원 이내 가. 지원한도액 범위 안 (금융기관 대출추천서 등 참조) 나. 연간 매출액이 8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% 이내 추가 가능 2. 특별 지원대상 : 5억원 이내 (융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, 도비 등 외부지원이 있는 경우, 10억원까지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) 가. 기존 은행융자액 범위 안 (금융기관 부채현황서 등 참조) 나. 신규 은행융자액 범위 안 (금융기관 대출추천서 등 참조) 3. 기타 지원대상(비제조업) : 7천만원 이내 가. 지원한도액 범위 안 (금융기관 대출추천서 등 참조) 나.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는 초과 매출액의 25%이내 추가 가능
지 원 조 건	1. 금리 : 은행 일반 대출 금리중 5% 이내를 이차보전 2. 이차보전기간 : 융자일로부터 2년간 (단, 특별 지원대상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) ※ 기간연장 : 1년만 연장가능 (단, 특별 지원대상은 제외한다.)

[별지 제2호서식]

중소기업 육성자금 용자 사업계획서

1. 사업기간 :

2. 사업개요 :

(※ 융자금 사용 목적에 관한 사업개요)

3.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(자금산출 증빙자료 첨부)

사업명(자금사용목적)	수 량	금 액	비 고

4. 소요자금 조달방법

계	자기자본	용 자	사 채	기 타

5. 융자금 상환계획

- 상환기간 :
- 상환방법 :

6. 전년도 혹은 기존 이차보전금 사용 여부

- 전년도[기존] 대출여부 : 대출(), 미대출()

기존 대출시 : [200 년 월, 은행, 대출액 : 원]

7. 융자금 대출방법

- ① 부동산담보 [] ② 은행신용 []
- ③ 신용보증인 [] ④ 신용보증서 [신용보증기금, 강원신용보증재단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자금지원추천신청 및 추천) ①용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<u>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자금지원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5. 기타 필요한 서류(유망중소기업 선정서, 수출실적증명서)</p> <p>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자금지원 추천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업체의 연간 매출액, 고용인원, 신용도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심사한 후 속초시와 협정된 시중은행에 지원금액의 한도내에서 자금지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자금지원추천신청 및 추천) ①----- -----<u>다음 각호</u> <u>중 해당하는 서류</u>----- -----.</p> <p>1.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금융기관 대출추천서(별지 제4호서식)</u></p> <p>6. <u>금융기관 부채현황서</u></p> <p>7. 기타 필요한 서류(유망중소기업 선정서, 수출실적증명서)</p> <p>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용자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심사한 후 속초시와 협정된 시중은행에 지원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금지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</p>
<p>제5조(자금지원 추천제외) ①(생략)</p> <p>1.~ 4.(생략)</p> <p>5. <u>대출상환 완료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</u></p> <p>6.~ 7.(생략)</p>	<p>제5조(자금지원 추천제외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~ 4.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용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</u></p> <p>6.~ 7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대출기한) ①자금지원을 추천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<u>1월이내</u>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(단, 대출기한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까지로 한다)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금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~ ③(생략)</p>	<p>제6조(대출기한) ①----- -----<u>3월이내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③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자금의 상환등) ①(생략)</p> <p>②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시중은행에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해당 시중은행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연장신청을 승인하고 매월말 현재 상환기간연장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④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제8조(이차지원금의 교부등)①이차보전금은 자금을 대출한 시중은행에서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②~③(생략)</p>	<p>제7조(자금의 상환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해당 시중은행에서는 매월말 현재 상환기간 연장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특별 지원대상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8조(이차지원금의 교부등)①----- -----협약을 맺은 소관부서별로 구분하여 신청-----.</p> <p>②~③(현행과 같음)</p>